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자 재산 등록시 사모펀드 별도 항목으로 등록〉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2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황승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9.
3. 회부연월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에 사모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3.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사모펀드”라 한다)
라. ~ 카. (생략)	마. ~ 타. (현행 라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 15.</u> (생 략) <u>④ ~ ⑦</u> (생 략)	<u>8. 사모펀드는 평가액</u> <u>9. ~ 16.</u>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 까지와 같음) <u>④ ~ ⑦</u>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등록하거나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상 재산등록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일정한 공직자에게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중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윤리 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기관 등이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의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 중 고위공직자(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에 대해서는 등록된 재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윤리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등록대상재산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제1호),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제2호),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제3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제4호), 주식매수선택권(제5호) 및 가상자산(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데,¹⁾

사모펀드 가입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에서 다른 간접투자상품 등과 함께 예금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의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 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등록 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재산등록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현금·수표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그 밖의 사 항 (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신규 / ()승진] []비공개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다만,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그런데, 재산등록 시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 펀드명, 유형 등을 따로 입력하더라도, 공개 시에는 예금 항목에 예탁기관별 총액으로만 나타나게 되므로, 일반 국민은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재산공개 시 예금항목 공개 예시 》

(단위: 천원)

▶ 예금(소계)					
본인과의 관계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증가액	감소액	
본인	K생명보험 30,000, S저축은행 40,000, N은행 5,000, M증권 100	90,000	20,000	10,000	100,000
배우자	...	...	...	...	...

자료: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 통합 검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통상 50인 미만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자들의 기호에 맞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특성이 있고,²⁾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가치와 경제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공개 단계에서 사모펀드 가입 사실을 일반 예금 등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외부에서 해당 재산의 성격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다른 동산·증권·채권·채무와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모펀드를 통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억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 의혹이나

2) 하연정, “사모 주식형 펀드 규모 비율과 주식시장 수익률”, 아태연구 제27권 제4호, 2020, p.2.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바, 사모펀드만을 이와 특별히 구분하여 별도 등록·공개대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기타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³⁾ 등록대상이 되는 사모펀드의 최소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8), 입법청원(청원번호 제2200033호, 김광태 외 53,898인)이 2024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3)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등록대상재산에 명시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